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50
----------	--------

제출연월일 : 2010.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민원의 납부 편리를 위하여 카드결제 시스템이 도입(2010.2.8)됨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이 다양화되고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에 맞춰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방법 신설(안 제4조의1)

- 민원의 납부 편리를 위하여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2010.2.8)에 따른 납부 방법 다양화

나. 수수료 면제범위 확대(안 제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3. 개정근거

-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
- 서울시 세무과 - 8808(2010.4.22)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0. 7. 8. ~ 7. 28. (제출의견 있음)

가) 환경과 : 환경과-13197(2010.7.9)

○ 제3조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 항목 추가

- 가목 종목란 "(3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나목 종목란 "(36)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신설

나)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5582(2010.7.28)

○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 개선 권고사항(제7조 징수시기)

- 제7조 2항의 수수료 미 반환규정을 제증명 발급 전,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반환할 것을 권고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8. 26)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한다.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를 삭제한다.

제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일반 동산·문화재를 등록신청 및 접수하는 증명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증명은 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 반환한다. 단, 제3조의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

제3조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2. 각종인·허가 및 신고사항(64종)”을 “2. 각종인·허가 및 신고사항(66종)”으로 하고, 동호 가목 종목란 “(3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단위란 “1건” 및 수수료액란 “10,000원”을 신설하고, 동호 나목 종목란 “(36)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단위란 “1건” 및 수수료액란 “5,000원”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u>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서울특별시 마포구</u></p>
<p>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u>의하여</u> 징수한다.</p>	<p>제2조(적용) <u>따라</u></p>
<p>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u>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u></p>	<p>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삭 제></p>
<p><신 설></p>	<p>제4조의1(납부방법) 수수료는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u></p>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략) 1. <u>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u>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p>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u>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u>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p>

현행	개정안
<p>「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위임받은자의 신청을 포함한다) 이 경우 본인의 증명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의 경우에는 제외한다.</p>	
<p>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p>	<p>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p>
<p>〈신 설〉</p>	<p>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p>
<p>〈신 설〉</p>	<p>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p>
<p>〈신 설〉</p>	<p>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p>
<p>〈신 설〉</p>	<p>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p>
<p>〈신 설〉</p>	<p>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p>
<p>〈신 설〉</p>	<p>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7조(징수시기) ① (생략)</p> <p>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일반 동산문화재를 등록신청 및 접수하는 증명</p> <p>② 제1항제2호에서 제9호의 증명은 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p> <p>제7조(징수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 반환한다. 단, 제3조의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p>

별표

현행			개정안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종 목	단위	수수료액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 (29) (생략) <신 설>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 (29) (현행과 같음) (30) <u>소음·진동배출시설</u> <u>설치허가 신청</u>	1건	10,000원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 (35) (생략) <신 설>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 (35) (현행과 같음) (36) <u>소음·진동배출시설</u> <u>설치신고</u>	1건	5,000원